

## 자산운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09. 5. 29. 규정 제 9 호  
 [시행 2012.11.28.] [규정 제145호, 2012.11.28., 일부개정]  
 [시행 2014.9.15.] [규정 제189호, 2014.9.15., 일부개정]  
 [시행 2015.1.1.] [규정 제202호, 2014.12.22., 타내규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정관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활한 운영을 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9.15>

1. 학자금지원부 담당 상임이사
2. 교육부장관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3. 이사장이 위촉하는 외부 민간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3인

② 제1항제3호의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의한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자산운용, 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경제, 경영 및 금융관련 학문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경제, 경영 및 금융관련분야 등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이상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자

③ 외부위원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12.11.28>

④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별지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28>

⑤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된다. <신설 2012.11.2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⑥ 위원회의 간사는 학자금지원부장으로 한다.

**제3조(의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자금지원부 담당 상임이사가 된다. <개정 2014.9.15>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제2호의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심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회의를 소집할 때 위원장은 회의사항을 각 위원에게 개최일 5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11.28>

**제5조(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9.15>

1. 자산운용 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투자결정 및 위험관리 등에 관련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나. 투자자산별 배분에 관한사항

다. 자산운용 실적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등

2. 자산운용 전략에 관한 사항

3. 자산운용 평가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4. 자금운용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5. 외부위탁운용기관 선정 및 관리에 관련된 제도 개선사항

6.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결방법)**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부득이한 경우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회 연속으로는 서면 의결할 수 없다. <개정 2012.11.28>

③ 서면 회의를 하는 경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28>

**제7조(의견진술)** 위원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재단의 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지정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의결권행사의 제한)** ① 위원회의 의결에 있어 당해 의안에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가 소속하는 기관 또는 기업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전반적인 운영문제가 심의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11.28>

② 제1항에 의하여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재적위원 및 출석위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심의·의결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2.11.28〉

**제9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개정 2012.11.28〉

1. 개회, 회의의 중지, 산회의 일시
2. 회의장소
3. 출석 및 결석위원과 참여자의 성명
4. 회의경과의 요지와 그 결과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회 운영 담당 부서에서 보존 및 관리한다. 〈신설 2012.11.28〉

[제목개정 2012.11.28]

**제10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제2조제1항제3호의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재단의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에의 참여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재단의 자산 운용과 관련된 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2.11.28〉

#### 부칙 (제정)

이 규정은 200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45호, 2012.11.28〉 (부패영향평가 자율개선을 위한 내규관리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89호, 2014.9.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202호, 2014.12.22〉 (직제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정기인사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자산운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재무관리부”를 “학자금지원부”로 하고, “재무관리부장”을 “학자금지원부장”으로 한다.

제3조 중 “재무관리부”를 “학자금지원부”로 한다.

⑭부터 ㉓까지 생략

[별지서식]

## 청 령 서 약 서

□ 위원회 명 :

본인은 위 안전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등 규정에 따라 공  
정하고 투명하게 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심의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아울러 상기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수주, 자문, 연구 등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했거나 이해당사자가 아니며, 또한 최근 3  
년 이내에 당해 심의 관련 업체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  
니다.

20 . . .

서 약 자 : (서명)

한국장학재단

위원장 귀하